

제주지방법원 2021. 2. 26 선고 2020가단537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1. 1. 15.

판결 선고2021. 2. 26.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19.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D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2019. 8. 1. 접수 제685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D 사이에 2019. 7.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D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9. 7. 31. 접수 제314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E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1항 기재와 같이 채권이 있는 사실, D이 별지 청구원인 2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그리고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여 받아들인다.

판사송현경

별지